

##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

(1쪽)

|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고인<br>(등록<br>의무자) | 성명 | 생년월일 | 전화번호<br>(휴대전화)<br>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|
|                    | 소속 | 직위   | 직급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주소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담당직무  
내용

※ 법령·직제·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.

| 이해충돌<br>직무관여<br>신고사항 | 직무<br>구분 | 발행인<br>(주식명) | 관여내역 |    |      | 직무회피가<br>불가능한 사유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일시   | 방법 | 세부내역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|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|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11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직무관여 사실을 신고합니다.

신고인

년 월 일  
(서명 또는 인)

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

첨부서류

직무에 관여한 내역과 이를 회피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# 작성방법

< ‘이해충돌 직무관여 신고사항’ 작성방법 >

- ‘구분’ 란에는 직무 관여사항에 다음 구분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십시오.
  -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·집행 등과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·감독하는 직무
  -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·조사·감독 및 검사와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·감독하는 직무
  -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·허가·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·감독하는 직무
  -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·부과·징수와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·감독하는 직무
  -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·감독에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·감독하는 직무
  -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·심의·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·감독하는 직무
  -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사건의 심의 또는 심판과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·감독하는 직무
  -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와 이를 지휘·감독하는 직무
- ‘관여내역’ 란에는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되어 관여한 직무내역을 일시, 관여방법(결재, 지시, 의견표명 등), 관여사항의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.  
(예: A기업과의 수의 계약체결을 최종 결재를 한 경우, 계약명 및 금액, 계약시기 등을 세부내역에 기재)
- 해당 직무 사항이 법령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를 근거 규정과 함께 기재하십시오.

업무 처리절차

신고시기 :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

신고서 작성·제출



신고서 접수



신고사항 공개

신청인

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

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 
(관보·공보 게재)

## 1.신탁(보유) 주식 내역

[illegible]

## 작성 방법

1.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(결혼한 딸 제외)의 순으로 적으십시오.
1. ‘발행인(주식명)’란에는 상장주식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(제3시장주식)은 종목명(예: ○○증권, xx전자)을 적고,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.
1. 가액(천원)은 백지신탁계약금액 또는 신고일 현재 기준의 가액을 적으십시오.
2. 신탁기관과 신탁일은 해당 주식을 신탁한 금융회사와 신탁일을 적으십시오.